

서울특별시 마포구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차 해 영 의원)

의 안 번 호	25-18
------------	-------

발의년월일: 2025. 2. .

발의자: 차해영, 강동오, 권영숙, 권인순,
김승수, 남해석, 이상원, 이한동,
최은하, 한선미

1. 개정이유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 피해자 보호 법령 등에 따른 구조(救助) 대상의 사각지대 범죄피해자의 지원에 한계 발생하고 있음. 이에, 사각지대에 있을 수 있는 범죄피해자의 지원 범위와 내용을 확대하여 피해자 지원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용어 정의 정비(안 제2조)
- 나. 범죄피해자 지원 범위 및 내용 확대하여 규정(안 제4조)
- 다. 기타 조문 정비(안 제3조, 제7조)

3. 관계법령

- 가.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 제5조

4. 조 례 안 : 붙임

5.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6. 기타사항

가. 입법예고: 2025. 2. 25. ~ 3. 4.

나. 의견제출: 없음

서울특별시 마포구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중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설립되어,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구를 관할하는 법인**”으로 한다.

제3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3항)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한다.

① 구청장은 경찰서 및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구가 운영하는 정신건강 관련 기관, 시설 등을 통한 정신상담 및 의료 연계
2. 구가 운영하는 법률복지서비스 지원
3. 구가 운영하는 일자리 지원 기관을 통한 취업 및 자립 지원

제7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2. (생략) 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u>설립된 비영리법인</u> 을 말한다.	제2조(정의) ① ----- -----. 1. 2. (현행과 같음) 3. ----- ----- <u>설립되어,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3조에 따라 등록된 구를 관할하는 법인</u>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생략)	제3조(구청장의 책무) (현행 제1항과 같음)
제4조(범죄피해자 지원 등) <신설>	제4조(범죄피해자 지원 등) ① <u>구청장은 경찰서 및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u> 1. <u>구가 운영하는 정신건강 관련 기관, 시설 등을 통한 정신상담 및 의료 연계</u> 2. <u>구가 운영하는 법률복지서비스 지원</u> 3. <u>구가 운영하는 일자리 지원 기관을 통한 취업 및 자립 지</u>

① ·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u>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u>	원 ② · ③ (현행 제1항 및 제2항과 같음) ④ 제2항----- ----- ----- -----. <삭제>
--	---

【관 계 법 령】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 2017. 3. 14.] [법률 제14583호, 2017. 3. 14., 일부개정]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4. “구조대상 범죄피해”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행하여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형법」 제9조, 제10조제1항, 제12조, 제22조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포함하며, 같은 법 제20조 또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 및 과실에 의한 행위는 제외한다)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애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것을 말한다.
5. “장애”란 범죄행위로 입은 부상이나 질병이 치료(그 증상이 고정된 때를 포함한다)된 후에 남은 신체의 장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6. “중상해”란 범죄행위로 인하여 신체나 그 생리적 기능에 손상을 입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제5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국가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책이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조(범죄피해자 지원 등)제1항 신설 항목 추가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서울특별시 마포구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조제1항 일부 수정안에 따른 비용 및 예산상 변동 없음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복지동행국 복지정책과 이정화
연 락 처	02-3153-8803